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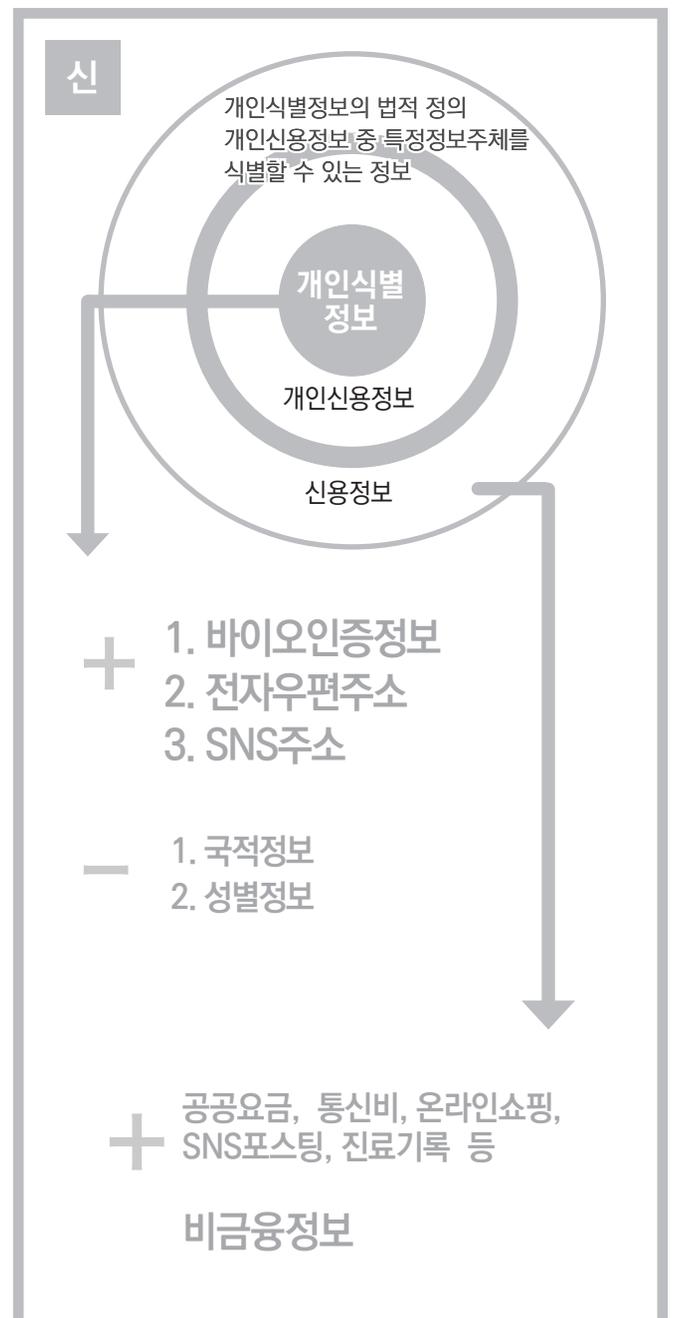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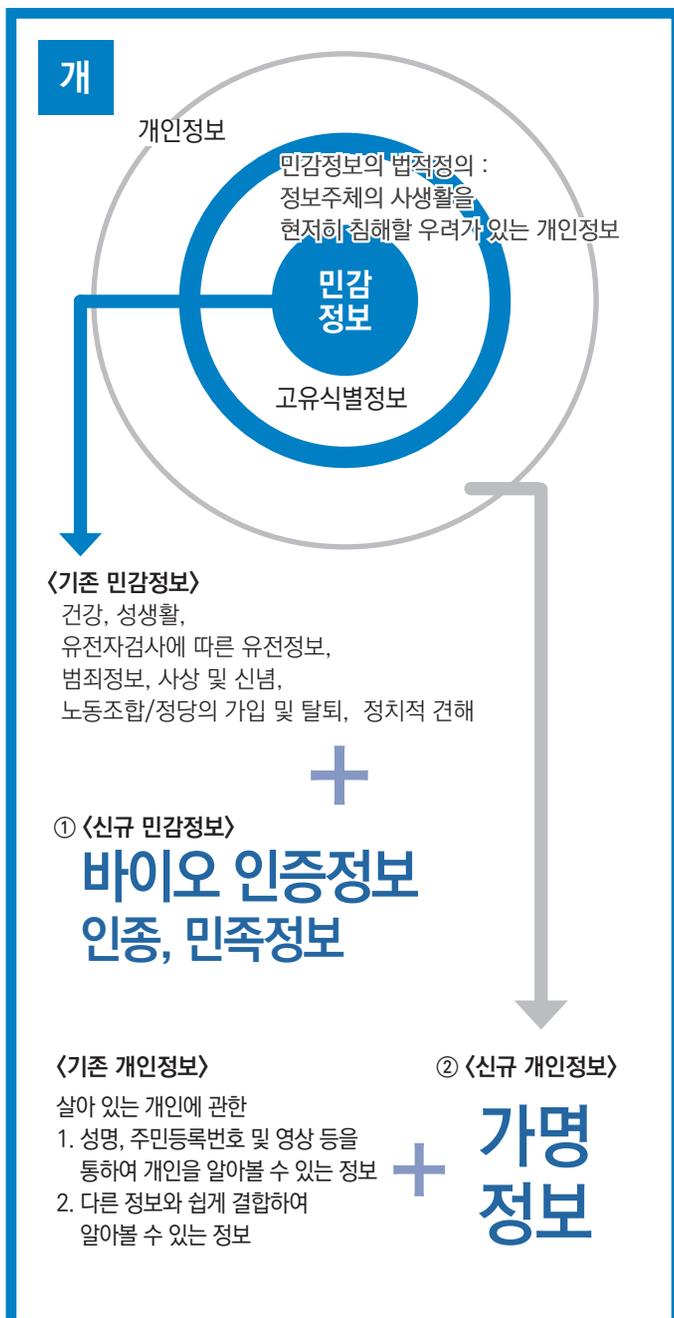
데이터3법.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련법 **전** 자금융거래법 **은** 라이투자연계금융법

개 **인정보 보호법** ① **민감정보에** **바이오인증, 인종민족정보 추가**

2020년 8월 20일 시행



개

① 민감정보에 바이오인증, 인종민족정보 추가

파란색텍스트: 신설규정 령 : 대통령령

규정	조항	내용	위반시 처벌
민감정보 규정	법 23조1항	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경우> 1. 별도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징역5년 벌금 5천
		② 민감정보 처리시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or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3천 유출시 징역2년 벌금 2천
민감정보 범위	령 18조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1. ~ 2. (현행과 같음)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20년 8월부터

개

별도동의 없이, 바이오인증정보 수집시 형사처벌

<기준>

바이오인증정보관련규정 위반시 과태료3천,
미조치로 유출시 징역2년 벌금2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7조	①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 보조저장매체로 전달시 암호화
	②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저장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개인 정보의 암호화	⑤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저장
	⑥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시행

**별도 동의없이 수집시
징역5년, 벌금5천, 몰수추징**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유출시 손해배상, 몰수추징**

이전 리포트보기 (2016.04 발송,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